

의안번호	2201651
의 퇴 인	소병훈의원
회 답 일	2024. 08. 07.
추계번호	24A1943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의2 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	○ 제11조의2제1항각호¹⁾²⁾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전용주차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함(제1항 후단 신설)³⁾	의무규정

1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.

1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2. 공동주택
3. 특별시장·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
4.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·시설 및 그 부대시설

2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8조의5(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)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(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, 이하 “총주차대수”라 한다)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·보급계획·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1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

- 가. 제1종 근린생활시설
- 나. 제2종 근린생활시설
- 다. 문화 및 집회시설
- 라. 판매시설
- 마. 운수시설
- 바. 의료시설
- 사. 교육연구시설
- 아. 운동시설
- 자. 업무시설
- 차. 숙박시설
- 카. 위락시설
- 타. 자동차 관련 시설
- 파. 방송통신시설
- 하. 발전시설
- 거. 관광 휴게시설
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

- 가.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
- 나. 기숙사

3.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1조의2 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사업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민간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지원⁴⁾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민간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6항은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 감소 및 설치 촉진을 위하여 금융 지원 및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이후 설치될 대상시설의 규모 및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단가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에 대한 지원 규모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,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고 이를 추정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므로 현시점에서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가 어려움

3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: 2201651) 부칙 제2조(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4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 (생략)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.

-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제11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대상시설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새로 설치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규모는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규정된 대상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비율 및 종류는 동법 시행령 제18조의7⁵⁾에 따라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
- 참고로 환경부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세부사업⁶⁾인 ‘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’의 내역사업인 ‘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·지원’에 2024년 예산 기준으로 4,365억원을 편성하였음

□ 이에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어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5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8조의7(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)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(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급속충전시설: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
2. 완속충전시설: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

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.

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·보급계획·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”이란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.

⑦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.

6) 세부사업 코드: 1633-312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신헌태	권아영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헌태	02-6788-4653	heontshin@nabo.go.kr